

1. 재해발생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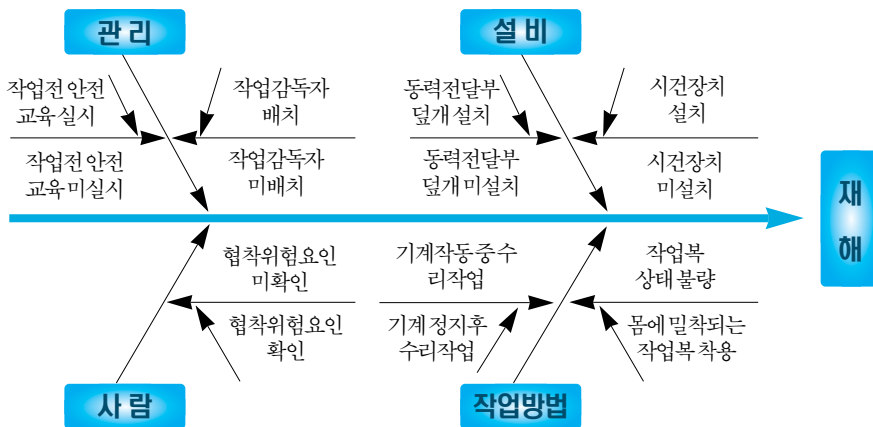
2004년 1월 ○일 15:35분경 충남 청양군 소재 ○○ 제지공장에서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초지기와 와이어파트에서 넘어온 지필이 프레스파트로 넘어갈 때 펠트에 잘 달라붙지 않고 자중에 의해 바다쪽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펠트에 Suction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드라이브 롤 구동용 샤프트볼트에 옷자락이 말려 협착사망한 재해임.



2

- 가. 기계가동중 수리작업 실시
- 나. 동력전달부 덮개 미설치
- 다.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

3. 재해 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정비 · 보수작업시 기계 정지후 작업 실시
 기계설비의 정비 · 청소 · 수리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, 기동스위치에는 「수리중조작금지」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시건을 한 후 작업해야함.

나. 동력전달부 덮개 설치
 기계의 축 또는 기어, 풀리, 벨트 등과 같이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분에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덮개, 울등을 설치하여야함.

다.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
 작업시 협착 등 위험성을 알려 주고 재해예방대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업 작 사 고 II

1. 재해발생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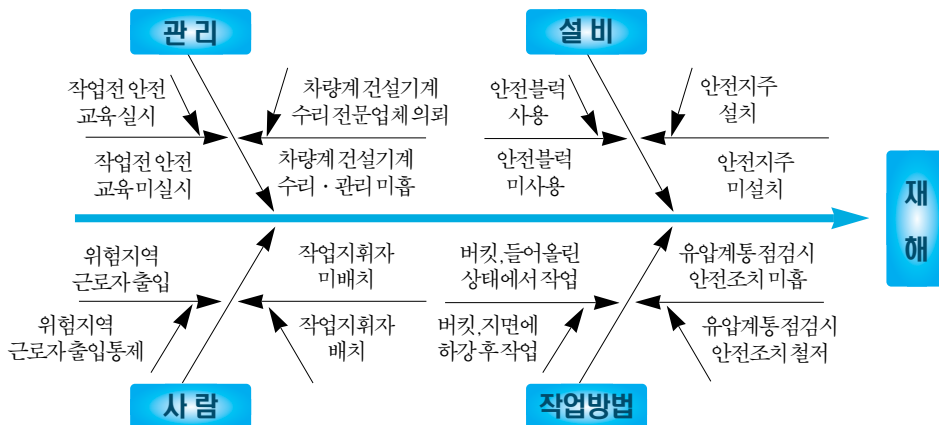
2004년 1월 ○일 08:15분경 서울시 은평구 소재 ○○환경 폐기물 처리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굴삭기 버킷을 들어올리고 시동을 끈 후 봄대 하부 유압계통을 점검하던 중 유압오일이 분출되면서 버킷이 급하강하여 버킷 하부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던 동료작업자는 버킷에 충돌하여 사망하고 운전기사인 재해자는 버킷과 트랙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
- 나. 수리·점검 등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
- 다. 작업지휘자 미배치

3. 재해 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실시
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에는 버킷 등을 지면에 내려두고 유압장치 등의 부속장치를 점검하여야 함.

나. 수리·점검 등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
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점검 작업시 불이 불시에 하강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지주 및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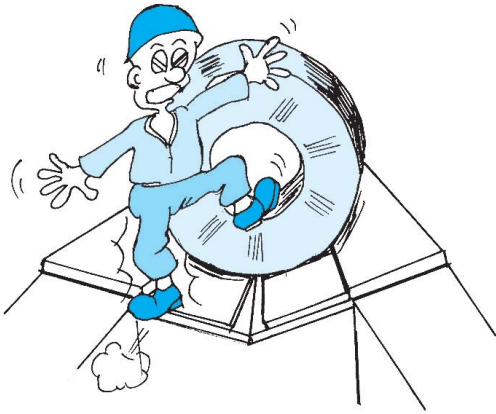
다. 작업지휘자 배치
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및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안전블럭 등의 사용여부 등을 지휘하여야 함.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1. 재해발생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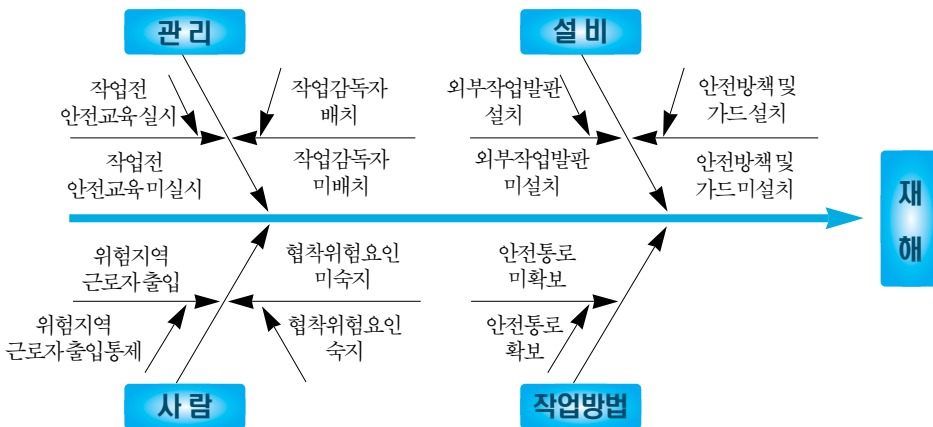
2004년 2월 ○일 15:40분경 부산시 남구 소재 ○○(주)작업장에서 생산한 통관용 코일을 언코일러에 장입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코일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동중인 코일카에 올라가 확인하던 중 상승하는 코일카와 받침대 사이에 재해자 왼쪽발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작동중인 코일공급장치에 접근
- 나.안전통로 미확보
- 다.근로자 안전교육 미흡

3. 재해 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작동중인 코일공급장치내 출입금지
작동중인 코일공급장치내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드 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함.

나. 안전통로 확보

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내의 제품확인 등 필요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작업발판 및 통로 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함.

다.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

자동화 설비내 근로자 출입시 협착·추락·충돌 등 위험성을 알려 주고 재해예방대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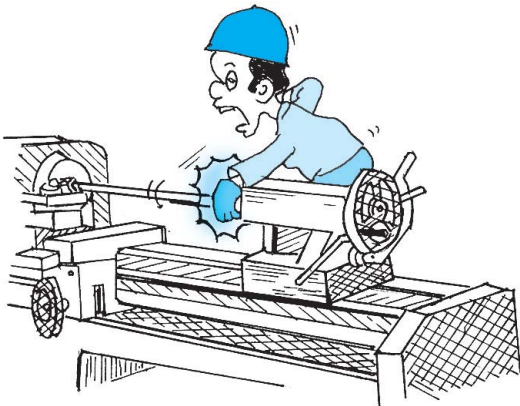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업 작 사 고 IV

1. 재해발생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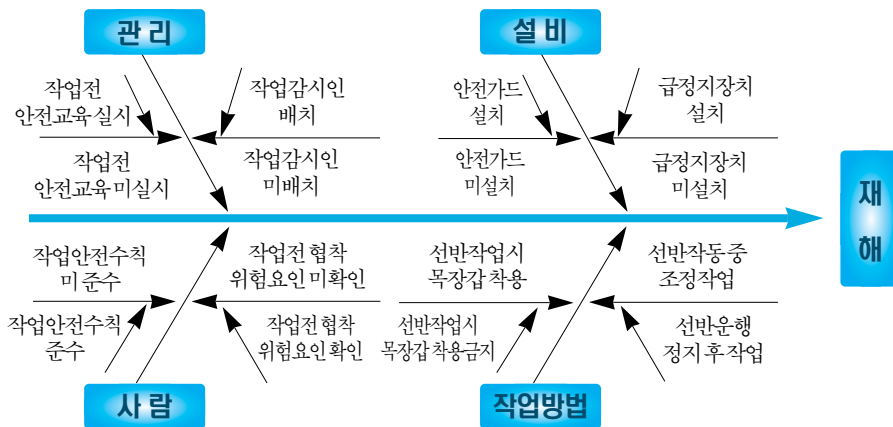
2004년 3월 ○일 14:00분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○
○산업 작업장내에서 선반으로 소재 절삭작업중 절삭유의 공급위치가 변동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정하던 중 재해자의 목장갑이 회전체에 말리면서 왕복대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선박작업시 목장갑 착용
- 나.절삭유공급위치조정작업시운전정지미실시
- 다.안전의식결여

3. 재해 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선반작업시 목장갑 착용금지
공작물등이 회전하는선반작업시에는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가죽제 장갑외에 목장갑 등을 착용을금지토록함.

나.절삭유 공급위치 조정작업시 기계운전 정지

절삭유 공급위치 조정 등 말림우려가 높은 회전체 근접 작업시에는 선반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근접작업을 실시하여야함.

다.안전교육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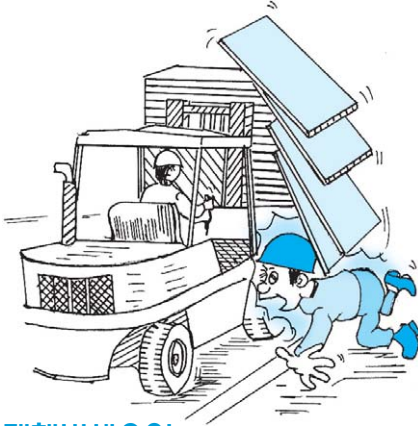
작업시작전 당해 작업의 위험성을 알려 주고 재해 예방대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1. 재해발생 경위

2004년 1월 ○일 22: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○개발 공장내에서 생산한 케이블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계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게차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쪽으로 케이블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충돌사망한 재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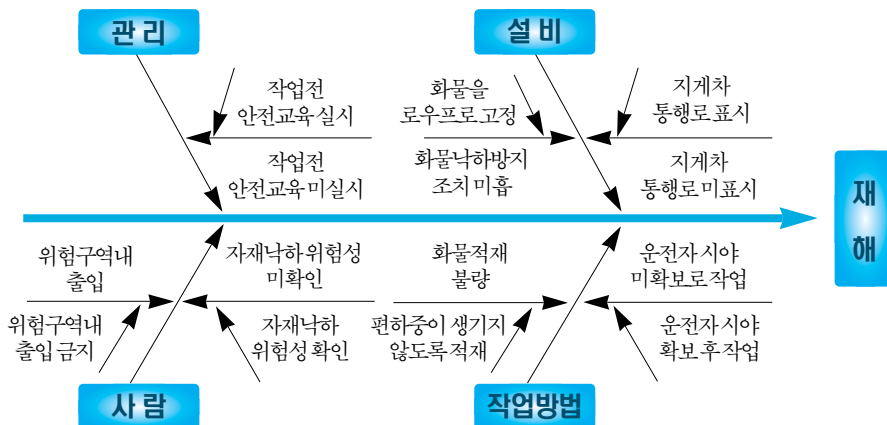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지게차 화물 적재상태 불량
- 나.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 안전조치 미흡
- 다. 안전의식 결여

3. 재해 요인도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

가. 화물 적재시 안전조치 철저

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하고 화물이 붕괴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에 로우프 등으로 고정 및 화물의 과다 적재로 인한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.

나. 근로자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 철저

화물 운반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행하는 주요 구간에는 지게차 통행로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
다. 안전의식 고취

작업 시작 전 당해 작업의 위험성을 알려 주고 재해 예방 대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낙 아 사 고 II

1. 재해발생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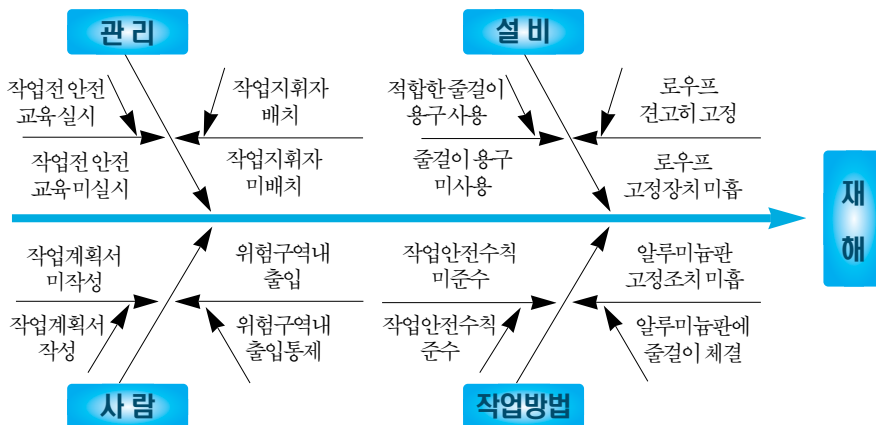
2004년 1월 ○일 08: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○엔지니어링 공장내에서 크레인에 펌프 배큘홀더 4개를 걸은 후 알루미늄판(517kg)을 머신 센터방향으로 운반하던 중 15m 높이에서 알루미늄판에 밀착되어 있던 배큘홀더가 이탈되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작업방법 부적절
- 나.작업계획서 미작성
- 다.작업지휘자 미배치

3. 재해 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작업방법 개선

중량물 줄걸이 작업을 할 때에는 판에 아이볼트 구멍이 있으므로 볼트를 체결하여 중량물 하중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여야함.

나.작업계획서 작성

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, 취급방법 및 순서,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함.

다.작업지휘자 배치

중량물 취급작업시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 및 그순서마다의 방법을 정하여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함.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